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5654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2.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redacted]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대한 배당액 107,140,910원을 92,256,40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921,460원을 4,004,450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365,455,548원을 379,836,188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53,549,420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53,501,449원으로, 선정자 F, G에 대한 각 배당액 20,303,086원을 21,125,12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진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 [redacted]광역시 부산진구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redacted]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부산광역시 [redacted]구에 대한 배당액 107,140,910원을 377,118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921,460원을 0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79,393,095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79,971,248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365,455,548원을 419,091,177원으로, 선정자 F, G에 대한 배당액 20,303,086원을 23,282,75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H의 채권자이자, [redacted]구 I 대 7㎡, [redacted]구 J 대 1,375㎡ 및 [redacted]구 K 대 1,8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redacted]은행(위 은행은 그 후 주식회사 [redacted]은행과 합병되어 주식회사 [redacted]은행으로 되었다가 현재 주식회사 [redacted]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전 은행, 상호변경 전 은행 및 현재의 은행을 통칭하여 [redacted]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1979. 11. 2. 접수 제35659호(위 J, K 토지) 및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1981. 6. 17. 접수 제21869호(위 I 토지)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식회사 H 지분 132분의 77 중 132분의 54에 관한 [redacted]지방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 채권신고를 한 자이다.

2)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는 2006. 6. 21.부터 2011. 8. 16.을 법정기일로 하는 재산세를, 피고 대한민국은 2007. 12. 15.부터 2014. 1. 15.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각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에 교부청구를 한 자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

1) 주식회사 H,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3개 회사'라 한다)가 H그룹의 창업자인 망 O의 무효인 유언증서에 따라, 망 O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속재산으로 3개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2)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3개 회사 및 우리은행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3개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redacted]은행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09. 5. 22. 선고 2008나52453 판결), 위 판결은 2009. 9. 24.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원고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선정자들에 해당하는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판결에 기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을 이하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1. D, A, E, P, Q, G에게,

가. M 주식회사, 주식회사 H는 연대하여 아래 표 ③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①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1995. 8. 28.부터 2006. 2.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그 중 아래 표 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1999. 6. 8.부터, D에 대한 106,786,363원, A, E에 대한 각 71,190,909원, P에 대한 17,797,727원, Q, G에 대한 각 5,932,575원에 대하여는 2006. 2. 28.까지, D에 대한 127,233원, A, E에 대한 각 84,822원, P에 대한 21,206원, Q, G에 대한 각 7,069원에 대하여는 2009. 4. 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N 주식회사는 M 주식회사, 주식회사 H와 연대하여 아래 표 ①란 기재 금원 중 아래 표 ④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1995. 8. 28.부터, D에 대한 3,874,196원에 대하여는 2008. 3. 19.까지, 나머지 359,085,187원에 대하여는 2009. 5. 22.까지, A, E, P, Q, G에 관하여는 2008. 3. 19.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순번	원고(상속지분)	피고 M, H		④ 피고 N (R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인한 금원 중 피고 N이 채무를 면한 부분)	비고
		① R 토지 및 건물 매각부분	③ 합계		
		② S 토지 매각부분			
1	D(18/132)	① 371,959,383원 ② 106,913,596원	478,872,979원	362,959,383원	
2	A(12/132)	① 247,972,922원 ② 71,275,731원	319,248,653원	241,972,922원	
3	E(12/132)	① 247,972,922원 ② 71,275,731원	319,248,653원	241,972,922원	
4	T(12/132)	① 245,390,124원 ② 71,190,909원	316,581,033원	239,390,124원	R 건물에 의하여 N이 채무를 면한 부분 제외
5	P(3/132)	① 61,993,230원 ② 17,818,933원	79,812,163원	60,493,230원	
6	Q(1/132)	① 20,664,410원 ② 5,939,644원	26,604,054원	20,164,410원	
7	G(1/132)	① 20,664,410원 ② 5,939,644원	26,604,054원	20,164,410원	

2.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원고들(D, A, E, T, P, Q, G)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표 ③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변제액으로 하여 각 1995. 8. 28. 및 1999. 6. 8. 피담보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 및 배당표 작성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1)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음과 같이 채권신고를 하였다.

	채권액	채권의 내용
선정자 D	각 478,872,979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액)	근저당권대위변제채권
	478,872,979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362,959,383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원고	각 319,248,653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액)	근저당권대위변제채권
	319,248,653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241,972,922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7,303,121원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선정자 E	각 319,248,653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액)	근저당권대위변제채권
	319,248,653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241,972,922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선정자 F	각 26,604,054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액)	근저당권대위변제채권
	26,604,054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20,164,410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선정자 G	각 26,604,054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액)	근저당권대위변제채권
	26,604,054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20,164,410원 및 이자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2)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1,266,999,372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채권금액	채권최고액	배당액	배당순위(이유)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137,737,400원	107,140,910원	107,140,910원	1 [압류권자겸 교부권자(당해세)]
피고 대한민국	29,196,650원	24,921,460원	24,921,460원	1 [압류권자겸 교부권자(당해세)]
T	316,581,033원	316,581,033원	241,601,218원	2 (근저당권자)
선정자 D	478,872,979원	478,872,979원	365,455,548원	2 (근저당권자)
원고	319,248,653원	319,248,653원	243,637,032원	2 (근저당권자)
선정자 E	319,248,653원	319,248,653원	243,637,032원	2 (근저당권자)
선정자 F	26,604,054원	26,604,054원	20,303,086원	2 (근저당권자)
선정자 G	26,604,054원	26,604,054원	20,303,086원	2 (근저당권자)
합 계			1,266,999,372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11.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다른 사건에 의한 배당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진행 중 이 사건 강제경매의 목적물의 공동담보물에 대한 경매사건(이하 '타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배당을 받았다.

	U[V(중복)] (배당기일 2015. 1. 27.)		W (배당기일 2015. 4. 16.)	
	배당액	배당순위(이유)	배당액	배당순위(이유)
피고[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45,480,995원	3(교부권자)
피고 대한민국			25,192,200원	4(압류권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선정자 D	47,922,013원	1(근저당권자)	65,495,417원	1(근저당권자)
원고	10,000,000원	1(근저당권자)	65,611,621원	1(근저당권자)
선정자 E	31,948,009원	1(근저당권자)	43,663,612원	1(근저당권자)
선정자 F	2,662,334원	1(근저당권자)	3,638,634원	1(근저당권자)
선정자 G	2,662,334원	1(근저당권자)	3,638,634원	1(근저당권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에 관한 부분

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는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의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당해세 우선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의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

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주식회사 H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세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54/132 지분만이 주식회사 H의 소유이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과세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다) 정당하게 계산한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의 채권액은 56,347,118원인데, 타 경매사건에서 45,480,995원을 배당받아 정당하게 계산된 채권 중 일부에 대한 만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구할 수 있는 채권액은 10,866,123원(56,347,118원 - 45,480,995원)에 불과하며,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의 채권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채권신고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등과 동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

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주식회사 H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54/132 지분만이 주식회사 H의 소유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다) 정당하게 계산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11,944,084원인데, 타 경매사건에서 25,192,200원을 배당받아 정당하게 계산된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을 것이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피고들의 세금 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하나,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타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3) 한편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고, 그에 따른 피고들의 채권은 세금 채권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의 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과 피고들의 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해야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나 지방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이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세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의 세금 채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세금 채권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타 경매사건에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사유가 이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세금 채권이 타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아 일부 소멸함에 따라 채권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타 경매사건에서 피고들이 배당을 받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redacted]구의 채권 137,737,400원 중 45,480,995원 및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29,196,650원 중 25,192,200원은 2015. 4. 16.자 배당(W)으로 인하여 각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redacted]에 대한 배당액 107,140,910원 중 14,884,505원(107,140,910원 - 92,256,405원)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921,460원 중 20,917,010원(24,921,460원 - 4,004,450원)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배당표의 작성

1) 결국 타 경매사건에서 원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근거로 피담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채권액 중 일부를, 피고들은 세금 채권임을 근거로 배당을 받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추가 배당되어야 할 35,801,515원은 (a) 원고,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남은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배당, (b) 피고들의 남은 세금 채권에 대한 배당, (c) 원고, 선정자들의 남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안분배당 순서로 배당을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타 경매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받은 금액이 아래 표와 같다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원고,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남은 피담보채권액은 다음 표 ④란 기재 금액과 같다.

구 분	①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②U [V(중복)]	③W	④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남은 피담보채권액
선정자 D	478,872,979	47,922,013	65,495,417	365,455,549
원고	319,248,653	10,000,000	65,611,621	243,637,032
선정자 E	319,248,653	31,948,009	43,663,612	243,637,032
선정자 F	26,604,054	2,662,334	3,638,634	20,303,086
선정자 G	26,604,054	2,662,334	3,638,634	20,303,086

3) 피고들의 세금 채권액과 타 경매사건에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이 아래 표와 같다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의 남은 세금 채권은 다음 표 ③란 기재 금액과 같다.

구 분	①세금 채권액	②W	③남은 세금 채권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137,737,400원	45,480,995원	92,256,405
피고 대한민국	29,196,650원	25,192,200원	4,004,450

4) 이 사건 강제경매의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T에 대한 배당금액 241,601,218원을 제하고, 위 (a), (b) 배당 과정에 따라 원고, 선정자들의 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남은 피담보채권액 및 피고들의 남은 세금 채권액을 제하면, 남은 금액은 35,801,514원(=1,266,999,372원 - 241,601,218원 - 365,455,549원 - 243,637,032원 - 243,637,032원 - 20,303,086원 - 20,303,086원 - 92,256,405원 - 4,004,450원)이다.

5)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인 2014. 11. 13. 기준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과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에서 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라 원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①원금		②2014. 11. 13.까지의 이자	③이 사건 구상금채권액(2014. 11. 13.)	④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라 원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
선정자 D	371,959,383		195,406,059 (1995. 8. 28. ~2006. 2. 28. 연5%)	2,554,739,692 (①원금 841,832,362 +②이자 1,712,907,330)	2,189,284,143
			647,718,859 (2006. 3. 1. ~2014. 11. 13. 연 20%)		
	106,913,596	106,786,363	35,927,035 (1999. 6. 8. ~2006. 2. 28. 연5%)		
			185,954,554 (2006. 3. 1. ~2014. 11. 13. 연20%)		
		127,233	62,535 (1999. 6. 8. ~2009. 4. 6. 연 5%)		
			142,640 (2009. 4. 7. ~2014. 11. 13. 연 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362,959,383	3,874,196	2,433,016 (1995. 8. 28. ~2008. 3. 19. 연 5%)		
			5,156,395 (2008. 3. 20. ~2014. 11. 13. 연 20%)		
		359,085,187	246,588,224 (1995. 8. 28. ~2009. 5. 22. 연 5%)		
			393,518,013 (2009. 5. 23. ~2014. 11. 13. 연 20%)		
원고	247,972,922		130,270,706 (1995. 8. 28. ~2006. 2. 28. 연5%)	1,752,682,145 (①원금 568,524,696 +②이자 1,184,157,449)	1,509,045,113
			431,812,573 (2006. 3. 1. ~2014. 11. 13. 연 20%)		
	71,275,731	71,190,909	23,951,352 (1999. 6. 8. ~2006. 2. 28. 연5%)		
			123,969,703 (2006. 3. 1. ~2014. 11. 13. 연20%)		
		84,822	41,690 (1999. 6. 8. ~2009. 4. 6. 연 5%)		
			95,093 (2009. 4. 7. ~2014. 11. 13. 연 20%)		
	241,972,922		151,960,317 (1995. 8. 28. ~2008. 3. 19. 연 5%)		
			322,056,015 (2008. 3. 20. ~2014. 11. 13. 연 20%)		
	7,303,121		-		
선정자 E	247,972,922		130,270,706 (1995. 8. 28. ~2006. 2. 28. 연5%)	1,745,379,024 (①원금 561,221,575 +②이자 1,184,157,449)	1,501,741,992
			431,812,573 (2006. 3. 1. ~2014. 11. 13. 연 20%)		
	71,275,731	71,190,909	23,951,352 (1999. 6. 8. ~2006. 2. 28. 연5%)		
			123,969,703 (2006. 3. 1. ~2014. 11. 13. 연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84,822	41,690 (1999. 6. 8. ~2009. 4. 6. 연 5%)		
			95,093 (2009. 4. 7. ~2014. 11. 13. 연 20%)		
	241,972,922		151,960,317 (1995. 8. 28. ~2008. 3. 19. 연 5%)		
			322,056,015 (2008. 3. 20. ~2014. 11. 13. 연 20%)		
선정자 F 및 선정자 G	20,664,410		10,855,892 (1995. 8. 28. ~2006. 2. 28. 연5%)	145,448,247 (①원금 46,768,464 +②이자 98,679,783)	125,145,161
			35,984,380 (2006. 3. 1. ~2014. 11. 13. 연 20%)		
	5,939,644	5,932,575	1,995,945 (1999. 6. 8. ~2006. 2. 28. 연5%)		
			10,330,807 (2006. 3. 1. ~2014. 11. 13. 연20%)		
		7,069	3,474 (1999. 6. 8. ~2009. 4. 6. 연 5%)		
			7,925 (2009. 4. 7. ~2014. 11. 13. 연 20%)		
	20,164,410		12,663,359 (1995. 8. 28. ~2008. 3. 19. 연 5%)		
			26,838,001 (2008. 3. 20. ~2014. 11. 13. 연 20%)		

6)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된 계산서에 기재된 이자채권에 의한 이자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배당에 포함될 수 있으나,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참조),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에서 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라 원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위 표 ④란 기재)에 따라 남은 배당금액인 35,801,514원을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위 (c) 배당과정).

구 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라 원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을 제한	증액되야 할 배당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나머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		
선정자 D	2,189,284,143	14,380,640	(2,189,284,143/5,450,361,570×35,801,514)
원고	1,509,045,113	9,912,388	(1,509,045,113/5,450,361,570×35,801,514)
선정자 E	1,501,741,992	9,864,417	(1,501,741,992/5,450,361,570×35,801,514)
선정자 F	125,145,161	822,035	(125,145,161/5,450,361,570×35,801,514)
선정자 G	125,145,161	822,035	(125,145,161/5,450,361,570×35,801,514)
합 계	5,450,361,570	35,801,514	

7) 소결론

따라서 [redacted]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에 대한 배당액 107,140,910원을 92,256,40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921,460원을 4,004,450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365,455,548원을 379,836,188원(365,455,548원 + 14,380,6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53,549,420원(243,637,032원 + 9,912,388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53,501,449원(243,637,032원 + 9,864,417원)으로, 선정자 F, G에 대한 각 배당액 20,303,086원을 21,125,121원(20,303,086원 + 822,035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이환기

판사 이민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1

선 정 자 명 단

1. A

2. D

3. E

4. F (한국이름; Q)

5. G

끝.